기술유출 발생시 대응 방안

유출사실 발생에 따른 보고

기술에 대한 침해 또는 유출사실을 발견한 경우, 간단한 사실 관계를 확인 후 기업내부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보고순서] 발견자 → 소속 부서장 → 상급 부서장 → 대표이사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조사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임직원 또는 부서를 파악하고 과거업무 내역 및 핵심기술 접촉 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

* 이메일, USB 등을 통한 자료반출 여부,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 및 수정 히스토리 조사 등 유출한 기술사용이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해당기술의 개발 및 출시 등의 동향을 파악
* 의심되는 회사와 관계되는 내부 임직원 또는 부서의 과거 및 현재 행적 등을 조사

추가 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 실시

영업비밀 침해를 자체적 확인결과 침해가 탐지되었거나 추가 침해가 예상 되는 경우 응급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방지

* 내부직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중요 문서, 파일 등을 즉각 회수하여 추가 유출 방지

외부 직원 및 네트워크에 의한 기술유출일 경우에는 회사 내부접근 및 네트워크 접속 등을 차단

침해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

침해 현장상황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물품은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비디오, 진술서 등을 신속히 확보

증거 신빙성을 위해 주체, 일시, 장소, 증거확보 경위 등도 포함해야 하고 진술서·확인서에는 본인 및 제3자의 서명도 필요(형사적 및 민사적 법적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조치방법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방법과 법적 구제방법이 있음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첫걸음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침

- 일본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기술보호 환경과 법률 동향

영업비밀의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공지성**: 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
- **경제적 유용성**: 사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일 것
- **비밀관리성**: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

비밀관리성의 인정 요건

판례 요건

① 객관적 인식 가능성: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것을 비밀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

② 액세스 제한: 정보에 접근 가능한 자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것

※ 주요 판결로, 코엔자임 Q10사건, CAD데이터 사건, 투자용 맨션 고객 명부 사건 등

실무적 요건

① 물리적·기술적 관리: 비밀 정보와 그 외의 정보, 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각각 구분

② 인적 관리: 권한에 근거해 액세스한 사람이 그것을 비밀이라고 인식하고 취급 조치를 강구

③ 조직적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액세스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일본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분	〈일 본〉 부정경쟁방지법	〈한 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부정수단 입수	• 절취, 사기, 강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하 "부정취득행위") • 부정취득행위로 인해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개시하는 것을 포함) (2조1항4호)	•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이하 "부정취득행위") •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 (2조3호가목)
부정취득 행위인식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재되었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하는 행위 (2조1항5호)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조3호나목)
부정취득 행위인식 후의사용, 개시	• 취득한 후에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재된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하는 행위 (2조1항6호)	•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조3호다목)
부정개시 행위	• 영업비밀을 보유하는 사업자(이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이 개시된 경우 •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해당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하는 행위 (2조1항7호)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조3호라목)
부정개시 행위인식	•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개시행위인 것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개시행위가 개재된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하는 행위 (2조1항8호)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조3호마목)
부정개시 행위 안 후의사용, 개시	•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개시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영업비밀 부정개시행위가 개재되었음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고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개시하는 행위 (2조1항9호)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조3호바목)
영업비밀 침해품 제공	• 제4호부터 전 호까지에서 제시하는 행위(기술상의 비밀(영업비밀 중, 기술상의 정보로 된 것)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한다. 이하 '부정사용행위'라고 한다)에 의해 발생한 물건을 양도, 인도, 양도 또는 인도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 (2조1항10호)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적 보호

- **제3조 (금지청구권)**
  - ① 실제로 반복 진행 중인 침해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협의의 금지청구
  - ② 미래의 침해 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예방 청구
  - ③ 침해 조성물 (침해 생성물을 포함)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구하는 제거 청구권
- **제4조 (손해배상)**
  -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형사적 보호

- **(행위자)**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영득, 부정사용, 부정공개 중, 일정 정도 위법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부과 (부경법 제21조, 영업비밀침해죄)
- **(법인)** 영업비밀 침해죄를 저지른 직원의 사용에 대하여 5억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동법 제22조)

기술보호 환경과 법률 동향

일본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

구 분			일 본 (부정경쟁방지법)	한 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	처벌범위	영업비밀 전득자에 대한 처벌	부정하게 공개된 영업비밀임을 알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전득자의 부정한 공개·사용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또한 전득자의 처벌을 양벌 규정의 대상으로도 함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한 자 누구나 처벌 대상으로 함
		해외에서의 행위 처벌	일본기업의 영업비밀의 해외에서의 사용, 개시, 갈취행위(취득)를 대상으로 함	한국기업의 영업비밀의 해외에서의 취득, 사용, 개시
		범죄 성립 시기	영업비밀 침해 기수, 미수를 범죄로 처벌	영업비밀 침해 음모, 예비, 미수를 범죄로 처벌
	법정형	자연인	– 징역 10년, 2,000만 엔 이하 – 해외중벌: 3,000만 엔 이하 – 범죄수익 몰수	–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이하 –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10배 상당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의 2배~10배 이하 – 국외 사용 목적 유출은 10년, 1억 원,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당이득액의 2배~10배 이하
		법인	– 5억 엔 이하 – 해외중벌 : 10억 엔	개인과 같음
	범죄수익 몰수제도		영업비밀 침해에 의해서 얻은 부정 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하는 규정 있음	별도의 규정 없음
	친고죄 여부 (고소 필요)		2015년 법개정을 통해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	2004년 법개정을 통해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
민사	영업비밀 침해물품의 수입금지 제도		○	○
	영업비밀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추정 규정		합리적 경험 법칙의 범위 및 원고와 피고가 입증하는 부담의 공평성 등의 관점에서 일정한 조건(영업비밀의 범위, 피고의 주관, 추정이 미치는 대상 행위) 하에 한정하고, 추정 규정 적용	별도의 추정 규정 없음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척기간		제척기간 20년 소멸시효 3년	제척기간 10년 소멸시효 3년

기술유출과 침해 대응 사례

해외 중벌 규정 적용 사례

광통신 부품 측정기기 영업비밀 해외 유출 사건

- 내용 : 이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기술을 부정 취득하여 해외 관련 회사에서 제조에 이용하도록 한 영업비밀 침해 사례
- 쟁점 :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부정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중벌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해외 중벌 규정을 적용된 첫 번째 사건임
  - 카와시마 제작소의 전 임원이 카와시마 제작소의 광통신 부품의 측정기에 대한 설계 도면을 사용하여 중국에 있는 자신의 관련 회사에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도록 지시함.
  - 전자 통신 기기의 제조 판매 회사인 “카와시마 제작소”에서 부정 입수한 독자 기술을 중국에서 사용했다고 하여,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국외 사용 등) 혐의로 회사의 거래처 기업의 임원(콘노 마사토 용의자)(45)를 추가 입건함
  - 용의자는 2016년 7~8월경 카와시마 제작소의 전 임원(부경법 위반죄로 기소)으로 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광섬유 제품의 검정에 사용하는 측정 기기의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면을 작성하도록 중국 회사에 지시, 측정기기를 제조시킨 건으로 처벌을 받음

고객정보를 명단업자에게 매각한 사례

베넷세 개인정보 유출사건

- 내용 : 베넷세 그룹 기업에 근무하던 파견 직원의 엔지니어가 고객 정보를 빼내 명단업자에게 매각한 사례
- 시사점 :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식하고 즉시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 긴급 대책을 강구하고, 의심스러운 권유 등을 억제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을 함과 동시에 피해고객에게 보상을 실시함
  - 2014년 6월 27일, 주식회사 베넷세 코포레이션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누설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 긴급 위기관리본부를 설치하고 이 문의에서 제공된 정보를 단서로 내부 조사를 시작함
  -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정보 유출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요청 및 형사고소, 위탁처 전 직원을 체포함
  -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하고 있을 사업자를 파악하고, 이용정지 협상을 실시,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실시함
  - 경제산업성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 권고를 받고, 개선 보고서를 제출함
  - 용의자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만 엔을 선고받음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간 분쟁 사례 ①

신일철주금 對 포스코 사건

- 내용 : 포스코에서 중국 바오산철강으로의 기술 유출에 관한 한국의 형사재판에서, 포스코의 前직원이 법원 진술을 통해 포스코의 기술이 아닌 신일철주금으로부터 포스코가 훔친 기술을 유출했다고 진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제기된 분쟁 사건
- 쟁점 : 신일철주금이 일본, 미국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 영업비밀 도용 포스코 방향성 전자강판 미국 내 수입금지 등을 청구하였고, 포스코는 한국에서 신일철주금에 대한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 시사점 :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전략적 제휴 관계에 있음. 서로 연구개발·기술 교류를 하는 관계에서도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기업 간 분쟁이 해결되더라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
  ▲신일철주금의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포스코와 다른 기업 간의 소송 중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발각된 것과 같이, 영업비밀 유출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기술이나 정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 유출이 있었다는 것 자체의 발견이나 증거를 파악하기 어려움
  - 2012년 4월 동경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사건으로, 포스코에서 중국 바오산철강으로의 기술 유출에 관한 한국의 형사재판에서, 포스코의 전직원이 법원 진술을 통해 포스코의 기술이 아닌 신일철주금으로부터 포스코가 훔친 기술을 유출했다고 진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영업비밀 분쟁이 제기됨
  - 이후 신일철주금은 포스코 등과의 3건의 소송에서 포스코로부터 300억 엔을 받고 화해를 하였고(2015년 9월), 정보를 유출한 前직원을 포함하는 10명에 대해 사죄와 함께 화해금 지불을 통해 화해하게 됨(2017년 4월). 화해금은 1인당 1억 엔(한화로 약 1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신일철주금과 포스코는, 2008년부터 맺어온 전략적 제휴를 화해 이후에도 연구개발, 기술교류, 원료조달 등의 분야에서 2018년 8월까지 3년간 추가로 갱신하였고, 2018년 8월에도 3년간 제휴를 연장함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간 분쟁 사례 ②

도시바 對 SK하이닉스 사건

- 내용 : SK하이닉스社의 직원이 입사 전, 도시바社의 제휴기업인 샌디스크社에서 근무하던 때에 도시바社의 기밀정보를 부정 유출하여 SK하이닉스社에서 사용한 사건
- 시사점 : ▲제휴社와의 관계에서도 영업비밀 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의해야 함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기업 간의 합의가 되어도, 별개로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함
  - SK하이닉스社의 해당 직원은 입사하기 전인 2008년 당시, 도시바社의 제휴기업인 샌디스크社에서 근무하던 때에 도시바社의 기밀정보를 부정 유출하여 SK하이닉스社에서 이를 사용함
  - 도시바社는 미국의 샌디스크社와 도시바社가 공동개발·공동생산하고 있는 NAND형 플래시메모리의 기술을 SK하이닉스社가 부정취득·사용한 건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2014년 3월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함
  - 2014년 12월 도쿄지방법원은 SK하이닉스社는 도시바社에 2억7,800만 달러(약 3,600억 원)를 지불하기로 하고 화해함
  - SK하이닉스社 직원에 대하여 징역 5년, 벌금 300만 엔(약 3,300만원)을 판결함

영업비밀 침해 대응 지침

영업비밀 침해 징후

직원에 의한 징후	• 비밀정보 접근의 증가 • 업무상 불필요한 자료에 대한 액세스 행위 • 특정 경쟁업체와의 잦은 접촉 • 급격한 소비 증가 • 불필요한 잔업 및 휴일 근무, 휴가 취득 거부
퇴사자에 의한 징후	• 퇴직 전 사내 트러블 존재 • 재직 시 타사와의 관계(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권유) • 퇴직자가 전직한 기업의 제조 · 판매 상품의 품질이 자사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
거래처에 의한 징후	• 자사만이 생산하는 특별한 부품에 대해 거래처가 갑작스럽게 거래 중단 •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서 자사의 비공개 정보나 자사 제품의 유사품이 거론 • 거래처의 불필요한 업무 자료 요청 및 일반 거래에 비해 이상하게 상세한 정보 조회 • 자사의 비밀 정보와 관련된 거래처 기업의 제품 품질의 급격한 향상 • 자사의 비밀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고객 점유율의 급격한 확대
외부인에 의한 징후	• 자사 내에서 도난 사건 발생 • 자사 내에서 도청기 등의 정찰 장비 발견 • 바이러스 프로그램, 보안기기 등에 의한 경보 발생 • 타사의 침해 조사에서 자사의 정보 발견

영업비밀 침해의 확인

직원에 의한 유출 확인	• 문서 관리 대장 등에 의한 정보 보유 현황의 확인 • 유출 징후가 있는 사람의 PC, USB 메모리, 이메일 등의 기록매체 로그 확인 • 사내 규정 등에 근거한 감사의 실시
퇴사자에 의한 유출 확인	• 유출 징후가 있는 퇴직자가 전직한 기업 및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전 동료들에게의 사정 청취 등 다양한 루트로 정보 수집 • 퇴직자와 관련하여, 퇴직 전후의 자료의 대폭적인 감소의 유무, 사내 자료 미반납 물품, 퇴직 전 일정 기간의 다운로드 데이터의 내용 및 이메일 등 통신 기록 모니터링
거래처에 의한 유출 확인	• 유출 징후가 있는 거래처 등이 제조 ·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확인 • (고객 명단 등을 의도적으로 넣은) 트랩 정보의 사용 확인 • 거래처가 자사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그 액세스 및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
외부인에 의한 유출 확인	• 타사 경쟁 제품, 유사 제품의 품질이 침해 시점 전후로 자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 • (고객 명단 등을 의도적으로 넣은) 트랩 정보의 사용 확인 • 암호유출 단말기, 불법 침입 여부 감시카메라 확인, 사내 자료 반출 여부 확인, 무단액세스 및 사이버 공격 유무 확인

영업비밀 침해의 초동대응

원인규명	•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보를 유출하였는가를 명확히 파악
피해검증	• 자사, 고객사, 소비자 등에 대하여 손실을 예측
추가확산 방지	• 사이버공격의 경우 자사 정보를 네트워크로부터 차단 • 컴퓨터 바이러스 피해의 경우 탐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기술전문가에게 의뢰 • 유출 의심자에게 경고장 송달 • 유출 정보가 공개된 경우 인터넷에서 해당 정보 삭제 요청
법률에 의한 절차	•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초하여 업종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
기업이미지 손실 최소화	• 고객 명단 유출시의 피해자 대응 · 언론 대응 •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사실 공표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조기에 상담 • 공동 연구 성과 유출 등 타사의 정보가 함께 유출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사에 대응을 문의

영업비밀 침해의 대응

구분	주요내용
민사적 구제	• 담당기관 : 법원 • 금지청구권(부경법 제3조), 부정경쟁에 따른 손해배상(부경법 제4조), 부정경쟁에 의해 훼손된 신용회복청구(부경법 제7조) 등에 따라 단독 혹은 함께 청구 가능 ※ 가처분에 의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부경법 제4조, 민법 제709조)과 신용회복조치(제7조)를 청구할 수 없음 • **(금지청구권, 부경법 제3조)** 금지청구권(제3조 제1항)과 폐기제거청구권(제3조 제2항)에 대하여 규정, 현재 또는 장래의 부정경쟁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을 해하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는 청구권 – 금지청구는 "~하지 마라"는 요구임. (ex. "저명표시와 동일 표시를 사용하지 말라") – 제2항의 폐기제거청구권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제3조제1항의 금지청구권과 함께 부대청구로서 인정됨 • **(손해배상청구, 부경법 제4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을 행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 ※ 손해배상청구권이 단서에 의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해당 부정경쟁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불법행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민법 제709조)을 청구할 수 있음 – 2015년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에 관한 추정 규정을 도입(부경법 제5의2). 일정한 조건(영업비밀의 범위, 피고의 주관, 추정이 미치는 대상 행위) 하에 한정하여 추정 규정이 적용됨

구분	주요내용
민사적 구제	• **(손해액의 추정)**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그 청구를 하는 피해자 측에 있는 것이 원칙 – (부경법 제5조제1항)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에 피해자가 그 침해 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액을 피침해자의 손해의 액 – (부경법 제5조제2항) 침해자가 침해 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제5조제2항) – (부경법 제5조제3항) 일정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대하여는 사용허락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 • **(손해계산 감정제도, 부경법 제8조)**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 침해에 관련되는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제기에 의해, 재판소가 해당침해 행위에 의한 손해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을 명했을 때는 당사자는 감정인에 대하여 해당감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해야만 함 • **(신용회복의 조치, 부경법 제14조)**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을 실시하여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영업상 신용을 손해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그 자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형사적 구제	• 담당기관 : 법원, 경찰청 • **형사처벌 대상 행위** – 부정목적을 갖고 행한 혼동야기 행위(부경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오인야기행위 (부경법 제2조제1항제13호) – 타인의 저명한 상품 등 표시에 관한 신용명성을 이용하여 부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해당 신용 명성을 해할 목적으로 행한 저명표시모용행위(부경법 제2조제1항제2호) –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내용 등에 있어 오인을 일으킬 허위의 표시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 행위(제2조제1항제4호. 제9호) – 외국의 국기 등의 상업상의 사용(부경법 제16조), 국제기관 표장의 상업상의 사용 (부경법 제17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 이익의 공여(부경법 제18조) – 부정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한 타인의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하는 행위 등 (부경법 제2조제1항제3호) – 법원의 비밀유지명령(부경법 제10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비밀유지명령위반행위 • **친고죄 유무** – 2015년 법개정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음 – 단, '비밀유지명령위반'에 한하여 피해자의 고소를 필요로 함(부경법 제21조제5항) • **처벌** –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 가능 – 단 상품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벌칙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 가능 – 외국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 가능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용인, 대리인 등이 부경법 제21조 각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가능

영업비밀 침해 대응 지침

증거의 보전 및 수집

증거의 보전

- 사내 네트워크의 액세스 로그나, 감시 카메라 등의 기록을 저장
- 유출이 의심되는 직원의 PC 등에 백업, 통신 기록 저장, 분석
- 유출이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 전화나 PC 등의 통신 기록을 받는데 성공한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에 의한 증거화

증거의 수집

-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경찰이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한 후 적절하고 신속하게 책임 추궁의 준비를 진행
-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데 유효한 자료
  - 정보 관리 수준을 알 수 있는 자료 (취업 규칙, 정보 관리 규정, 관리 상황에 관한 사내 문서 등)
  - 유출이 의심되는 사람과 자사 사이에 맺어진 비밀 유지 서약서
  - 정보 취급에 관한 사내 교육 등의 실시 상황에 관한 사내 기록
  - 특정 정보에 대한 극비 마크의 부기, 액세스 제한, 시정 등의 정보의 관리 상황에 관한 사내 기록 (교육 매뉴얼 등)
  - 유출이 의심되는 사람이 유출에 관한 정보가 비밀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사내에서의 실제 관리 상황, 구두에 의한 정보 관리에 관한 주의 환기 상황, 합의 문서 등)

타사로부터의 영업비밀 분쟁 대비

자사 정보의 독자성 입증

- 기술 정보에 관해서는 당해 기술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실험 과정 등을 기재한 랩 노트를 작성
- 영업 정보 중 ▲고객 명단에 관해서는 고객으로 된 경위의 기록(어떤 광고를 보고 어떤 액세스가 있었는지 기록, 회원 가입 신청서 등의 원본 등), ▲거래 정보에 관해서는 그 작성 경위의 기록으로서, 거래 경위를 기록한 서면(거래 전표 등의 원본 등), 접객 매뉴얼은 그 작성에 이르는 회의록 등을 저장함
- 이러한 자료를 필요에 따라 공정증서화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임
- 전자문서화 하여 인증 타임스탬프나 전자공증 이용

타사 비밀정보의 의도치 않은 침해 방지

- 정보의 생성 과정이나 입수 경로에 부정은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
- 타사로부터 받은 비밀 정보는 자사 정보와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
- 사내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직원의 타사 정보 침해 리스크를 줄임
-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자사의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영업비밀 침해품에 관한 분쟁 방지

- 자사가 거래하는 제품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품이다.”라고 하는 경고장을 타사로부터 받은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거래처 등 관계자에게 그 진위를 확인
- 만약 그 제품이 영업비밀 침해품 의혹이 상당할 경우, 제품 거래는 일단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
-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거래처 등의 관계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취득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지침

○ 산업재산권 침해를 받은 경우의 대응

구 분	내 용
피해 특허 선택	• 단독/소수의 특허 제시 혹은 다수 특허 리스트 제시(단, 재판에서는 한정된 특허로 진행)
피의 침해품 입수	• 시판품을 소매점에서 구입 (영수증을 보존) • 공통의 고객(중간도매상 등)으로부터 입수
피의 침해품에 관한 정보 수집	• 취급 설명서·팜플렛·카탈로그 • 사양서 • 기술정보 • 웹 사이트 검색 • 아카이브 사이트(Wayback Machine) 검색 • 피의침해자에 의한 특허 출원 • 피의침해자의 서플라이어에 의한 특허 출원
경고장 작성 및 송부	• 경고장 송부의 득과 실을 판단 •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협상의 진행할 수도 있지만, 협상기간이 지연되거나 증거 인멸 및 설계 변경의 우려가 있음
면담 및 교섭	• 레터가 서로 오간 후, 양 당사자만, 혹은 양 당사자+양 대리인, 양 대리인으로 구성하여 면담 및 교섭 진행
본안소송과 가처분	• 비용, 기간,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하여 본안소송 혹은 가처분 소송 진행을 선택
소장 작성	• 금지 대상을 특정 • 손해액과 부당이득액을 설정
변론과 변론준비절차	• 소송절차(1심) – 제1회 구두 변론 – 피고의 비침해·무효의 반론 – 특허청에 무효 심판이 제기됨 – 원고의 반론 ※ 원고·피고의 주장이 3번 정도 오고 감 – 재판부가 침해론·유효론에 대한 심증을 가짐 ※ 비침해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청의 판단을 기다리며 진행 – 특허청의 심결 – 판결 • 항소심 : 약 10~14개월 • 상고수리 : 약 6개월 • 변론준비절차 : 비공개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	• 무효 심결 후 정정 심판 청구는 금지됨 • 정정청구 기회는 원칙적으로 ▲ 답변서 제출시와 ▲ 심결 예고 후의 지정 기간 내로, 2회만 주어짐
법원에서의 화해	• 1심 법원에서 침해론 및 무효론에 관한 심리를 끝내고, 재판부 합의체의 합의를 끝마친 시점 • 1심 법원에 있어서 손해론의 심리 및 합의를 끝마친 시점 • 2심 법원에 있어서 심리를 끝내고 합의를 끝마친 시점

타사로부터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 대비

구 분		내 용
대응 사전 준비	권리자의 조사	• 등기부 등본, 설립 서류 • 구 출원인·현 권리자의 조사
	특허권의 조사	• 등록 원부에 의한 권리자 변동의 유무의 확인 • 패밀리의 파악 •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 명세서의 취득 • 경고장에서 특정된 특허 이외의 관련 특허의 조사
	피의 침해품의 조사	• 경고장에서 특정된 대상 제품의 제품번호의 확인 • 경고장에서 특정되지 않았던 관련 제품의 유무의 확인 • 관련 사양의 구체적 행위의 여러 형태 조사 • 제조 판매 기간, 수량, 매출의 파악 • 부품, 모듈의 서플라이어와의 계약 내용 확인
	무효이유 조사와 증거수집	• 패밀리 심사 경과에서의 인용예 • 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 • 권리자/경합 타사의 제품 자료·현물의 입수·분석 • 구글 검색/아카이브 사이트 검색 • IT관계는 일반 서적·잡지 기사 검색이 중요
	선사용권	• 출원일 전의 실시와 그 범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간접 증거(품의서, 회의록, 발주서, 사양서, 공정서 등)를 다수 조합하여 입증하게 됨 •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
협상 대응	회답서 송부	• 무시하면 권리자는 제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일단 회답을 하여 시간을 벌 수 있음
	면담 및 교섭	• 공지 문헌은 충분한 논리 구성 후 제시하는 것이 좋음 • 피의 침해품의 사양은 비침해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제시 • 설계 변경이 완료한 시점에서 설계 변경 사실 제시 • 면담 시 참가자는 ▲양 당사자만인 경우, ▲양 당사자 +양 대리인인 경우, ▲양 대리인만인 경우가 있음
법적 조치 대응	무효심판 청구	• 청구 타이밍은 가능한 한 빠른 것이 좋음. 복수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 • 심판청구의 이유와 무효항변의 이유의 관계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음 • 무효심결 후의 정정심판 청구 금지
	반소제기	• 자사 특허에 의한 특허침해소송제기 • 특허무효심판청구 • 부정경쟁방지법 및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제기

중소기업 기술보호 핵심수칙

기술보호를 위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실시해야 한다.

기술보호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영업비밀 분류 및 취급, 종업원의 의무, 영업비밀 보관·파기, 출입자 통제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보안관리 전담인력은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기술보호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기술보호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전 직원 비밀유지서약서, 핵심직원은 전직금지서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모든 직원과 비밀유지서약서 체결, 핵심개발자 및 임원과 전직금지서약서 체결해 기술을 지켜야 한다.

핵심기술 인력이 퇴직할 경우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인력의 퇴직 시 영업비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서류/기술정보 반납 및 파일삭제 확인서를 받고 영업비밀 준수의무 및 처벌규정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중요 기술은 영업비밀로 분류하고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기업자산(기술) 중 영업비밀을 파악하고 등급(극비/비밀/대외비)을 부여하고 표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중요서류는 별도 보관하고 접근·복제·반출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중요서류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자료를 임의로 복제와 반출할 수 없도록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해야 한다.

중요설비·장치가 설치된 곳은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발 및 제조설비 지역은 '출입통제구역'으로 정하고, 카메라 및 스마트폰의 반입을 금지하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중요한 기술은 특허나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하다.

개발한 기술을 특허등록하고, 영업비밀은 기술자료 임치로 보호해야 안전하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네트워크 인증, 데이터 암호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허가된 USB 사용하기, 기술지킴이(보안관제) 서비스를 활용해 기술자료를 지켜야 한다.

기술유출 주체 및 방법

기술유출 주체

내부인에 의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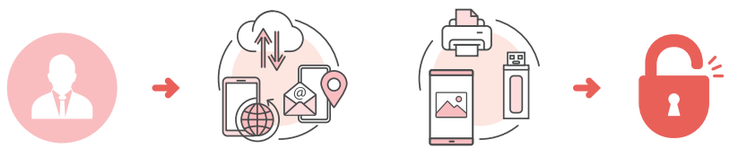

외부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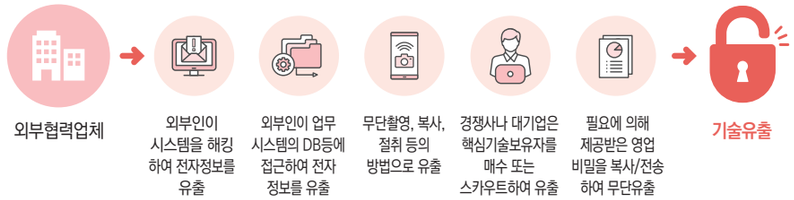

기술유출 방법

ON-LINE

- E-mail을 이용한 전자 문서의 전송, 웹 하드 등 P2P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공유, 메신저를 이용한 유출이 주요 이슈

OFF-LINE

- 기업의 감시망을 피해 노트북이나 휴대용 저장매체를 불법 반출하거나, 프린트나 복사물의 형태로 유출
- USB나 플래시 메모리 등 지능형 미디어를 이용한 기술유출이 증가

기술유출 경로

- 인력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산업스파이를 이용한 기술 유출
- 거래업체를 통하여 부품 및 장비를 불법적으로 유출
- 합법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핵심인력 이동

기술보호와 인력관리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은 조직 내부의 인력관리이며, 재직기간 중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 교육 필요

채용자 관리 (신규, 경력)

- **(신규)** 도덕성, 범죄 및 개인파산 등의 법률적 이력, 입사동기 등 신상정보를 면밀히 검토
- **(경력)** 개인의 신상정보와 더불어 이전 회사의 퇴직 동기, 이전 회사에서 취급하였던 영업비밀을 서면 으로 제출토록 하여 동종 기업 간 영업비밀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재직자 관리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

- 입사, 교육, 부서배치, 프로젝트 투입 등의 경우에 모든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 비밀유지서약서(보안서약서)는 분쟁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업무의 범위, 신분, 기밀의 범위 등 명시)

전직/경업 금지 약정

-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정보(기술, 고객, 거래처 등)를 이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약정

  * 핵심 기술인력 또는 임원에 한하여 체결 가능

- 통상 전직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이고 경업금지약정의 인정기간은 2~3년임

사원증 관리

- 재직자와 외부 방문객을 구분하고 출입지역에 대한 차등적 제한 필요

퇴직자 관리

- 기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고,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특약이 포함된 사직서 징구

  * 영업비밀 보유자 등 핵심인력이 퇴직하고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 퇴사자가 재직 시 작성한 각종 서약서나 프로젝트 투입 기록, 전자파일 등을 해당 부서 팀장 또는 중역· 보안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반드시 보존